사 천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2년도 식품·첨가물 제조업 생산실적 보고기간 규정 개선 알림

1.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
 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
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-472호(2023.1.17.)
 다. 경상남도 식품의약과-1631(2023.1.18.)

3. 위 호에 따라, 식품 · 식품첨가물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는 **당초 해당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**에서 **2개월 이내로 규정 개선('23.1.20, 시행규칙 개정공포 예정)**됨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 천 시 장

수신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14개소

주무관 **김태운** 식품안전팀장 **곽승원** 보건위생과장 전결 2023. 1. 19. **김삼수**
협조자

시행 보건위생과-2471 (2023. 1. 20.) 접수

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-1, (사천시청) / www.sacheon.go.kr

전화번호 055-831-3617 팩스번호 055-831-6041 / kimtw1125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!"